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입법동향 – 2024 - 제4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전국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
2. 「전라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4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 7
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9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 11
2.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 19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1.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30
2. 「의회 도서자료실 신착 도서(1차) 목록」 ····· 35

Ⅴ. 법령 해석 사례

1.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 관련 ····· 44
2. 상수원보호구역 폐교재산 용도변경 관련 ····· 50
3.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 ····· 55

Ⅵ.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실태 ····· 59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1., 대구광역시조례 제6110호, 2024. 4. 1., 제정】

□ 소관위원회 : 농산업경제위원회

□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가 5대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나.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다.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제7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6곳(경기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세계 로봇산업**은 **2020년 약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0% 성장**이 전망됨.(한국수출입은행 VOL.2022-이슈-16(2022. 9.))

○ **2020년 한국 로봇 생산**은 5.0조원으로 **연평균 3.6% 성장이 전망**되나, 로봇산업 관련 사업체 수 약 2,500개 중 **중소기업이 98.5%로 자본력이 약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소수**에 불과함.

○ **호남권** 로봇산업 관련 업체는 **총 114개**(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로 우리도 실정에 맞게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대구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 4. 1., 대구광역시조례 제6110호, 2024. 4. 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로봇 및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과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산업 클러스터**”란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집적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
3. 로봇산업의 부문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4. 로봇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방안**
5.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로봇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관련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기술 개발 촉진 및 기반 조성 사업**
2.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3.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사업**
4.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5.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로봇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전라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4., 전라남도조례 제5961호, 2024. 4. 4., 제정】

□ 소관위원회 : 환경복지위원회

□ 제정이유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조례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제2조).

다.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정의함(제4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총 9곳(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총 10곳***임.(* 신흥, 방수리, 옥정호, 월락, 무주, 설천, 구천, 안성, 동화댐, 부안댐)

○ **「상수원관리규칙」**(환경부령 제994호) 제12조제4호타목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상수원 보호구역에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우리도는 관련 조례가 없는 바, 상수원의 보호 및 수질을 보전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정의 검토가 필요함**.

전라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4., 전라남도조례 제5961호, 2024. 4. 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 ① 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업용 취수시설**
2. 농림업 체험·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의 시설**

② 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주민자치센터**
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8호, 2024. 3.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 2021년 12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전부개정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한편,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에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추가함(안 제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이 법률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한 것으로

○ 우리도는 관련 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399호)하고 있지만 이 조례 **제5조(시행계획 등)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연령의 특성에 맞게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 제5조(시행계획 등)** 및 **제7조(지원사업 등)** 등의 **일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전부개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1.,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전부개정】

□ 개정이유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위 제도들**이 **각각 다른 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등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 이에 추상적인 환경권 개념을 감안하여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재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심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나. 환경분쟁조정 업무 외에 **환경피해구제, 건강피해조사 업무**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함(안 제8조).

다.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 이 법률안은 각각 **다른 기관에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사, 조정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추상적인 환경권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전부개정한 것임.

○ 다만, 이 법은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법 시행까지 **7개월 여의 공백**이 있는 바,

○ 법 시행(2025. 1. 1.) 전(前)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제명, 제2조(위원회 구성)* 등의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북자치도 조례는 20명 이내로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4-03호, 통권 제241호, 최창수】

◇ **최근 미국**에서는 **주택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심각한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사회주택이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미국은 기존까지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주로 저소득층에 제공해왔지만, 최근 대두된 사회주택은 저가임대주택보다 진일보한 개념으로, 관련 법률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들로 구성된다.

◇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주법에서는 사회주택 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건설의** 자금조달, 주택 개발 및 관리 등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사회주택 임대수익의 일부는 또 다른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비롯하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주택난 해소를 위해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수 있다.

□ 도입

미국의 연방정부는 **국가의 부동산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므로 **공공주택 또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는데 소극적**이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와 지방정부**(시 또는 카운티)에서는 **부동산 시장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주택난, 주택 노후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social housing)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미국에서 **사회주택**은 **부동산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 미국은 오랫동안 공공주택(public housing)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 공공주택 중 특히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을 공급하는 데 집중해왔다.
- 그런데 최근 사회주택이 새롭게 부상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특징**을 비교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시장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 그러나 **저가임대주택제도**는 **특정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사회주택 제도**는 **주택공급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체계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1 미국의 저가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특징

구 분	저가임대주택 (Affordable)	사회주택 (Social Housing)
저렴한 임차료	○	○

구 분	저가임대주택 (Affordable)	사회주택 (Social Housing)
장기간 제공	○	○
공급자 지원	융자 지원	투자, 건설을 위한 전담 기관 및 기금 설치
수요자 지원	저소득층/수혜대상자	중산층/저소득층/수혜대상자

미국 사회주택제도의 핵심은 사회주택을 건설하려는 **공급자**에게 융자나 보조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기관의 주도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 **사회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소득층과 특정 수혜대상자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필요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 **사회주택의 수혜대상자**를 **'지역중위소득'**(area median income)을 **기준으로 규정**한다.

□ 주요 입법례

1. 뉴욕주

뉴욕주 의회는 **1955년에 「유한영리주택회사법」**(Limited-Profit Housing Companies Act)을 **제정**하였다.

- 민간주택개발업체가 영리 및 비영리 목적을 겸비한 유한영리주택회사를 설립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 **1955년~1981년 사이**에 유한영리주택회사가 공동 소유하는 **69,000개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며, **저이율의 담보대출 및 세금 감면을 받아 100,000개 이상의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2024년 2월에 코델 클레어(Cordell Cleare) 등 상원의원 5인과 에밀리 갤러거(Emily Gallagher) 등 하원의원 5인은 각각 '사회주택개발청'(Social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을 신설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80%~165% 해당자)도 **포함**한다.
- 이 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인 사회주택개발청이 뉴욕주 내에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 구체적으로, 토지의 취득, 기존 주택의 개조 및 복구, 영구적인 저렴한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법적 방안들이 규정되어 있다.

2. 하와이주

하와이주는 **최근 사회주택의 임차료 및 소유권에 관한 일련의 법률안**을 **통과**시켜 사회주택 건설을 지원하는 법체계를 확립하였다.

- **2022년에 발의되어 법률로 통과**된 '상원 법안 제2251호'(Senate Bill 2251)에서는 **부동산의 철거·개량·리모델링,** 주택건설프로젝트 관련 **기획·개발·건축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하와이주 공공주택청**(Hawaii Public Housing Authority)에 **부여**하였다.

- 하와이주 공공주택청은 민간주택개발자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부동산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

하와이주 의회는 **2023년**에 **'모두를 위한 현지인 소유의 저가주택'**(Affordable, Locally Owned Homes for All)의 앞 글자를 딴 **「ALOHA법」을 제정**하였다.

- 도시재개발지역 내 하와이주와 카운티 소유의 토지에, 저가의 주거용 주택(condominium)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다.
- **하와이주 도시개발청**(Community Development Authority)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 50%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0%~140% 해당자)**에게 공급**한다.
- **최초 주택을 매수하는 주민**에게 **저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선택권**을 **부여**하며, 주민이 **5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기로 합의**하면 **최대 99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주 의회는 **2022년에 중산층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중산층주택청법」**(Middle-Income Housing Authority Act)을 **제정**하였다.

- 이 법률에서 **'중산층' 이란**, 저가임대주택이 위치한 카운티 내 가구들의 지역중위소득 **80%~120%에 해당하는 연간소득을 가진 계층**을 의미한다.
- **중산층주택청**이 **임대주택의 취득, 건설, 리모델링, 소유, 운영 및 자금조달**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 중산층주택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하고, 중산층주택청은 민관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

중산층주택청은 콜로라도주 상원의 동의를 받아 **주지사가 지명한 이사들로 구성되는 관계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계위원회가 사회주택 건설프로젝트 제안서를 승인**한 후 **주택이 건설**되면, **부동산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중산층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한다.

4.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사회주택제도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 사회주택의 수혜대상자**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지역중위소득의 80%~150% 해당자)도 **포함**한다.

공공주택기관인 **주택기회위원회**(Housing Opportunities Commission)가 **사회주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전담**한다.

- **주택기회위원회**는 그 산하에 저가주택국(affordable housing agency), 주택금융국(housingfinance agency), 주택개발국(housing developer) 등 3개국을 두어, **사회주택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 **주택기회위원회**는 **사회주택의 소유자이자 개발자**이며, **주택금융국**이 사회주택개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주택개발국에 융자**를 **제공**한다.
- **외부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 주택금융국과 협력**하여 **채권발행, 자금조달 및 융자상환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기회위원회는 사회주택개발을 위한 **회전융자기금**(revolving loan fund)인 **'주택보급기금'** (Housing Production Fund)을 **통해 운용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는 2021년~2022년에 총 100만 달러의 특별세출 예산할당(안)을 승인하여 **2026년까지 5년 프로젝트를 위한 주택보급 기금을 설치**하였다.
- 주택기회위원회가 저금리로 조달한 **1억 달러의 채권**은 **향후 임차인에게 받을 수익금에서 상환**된다.
- 채권이 상환된 후 임대료 수익금은 주택보급기금에 다시 전입하거나 추가적인 사회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한다.

5. 워싱턴주 시애틀시

2023년 2월에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는 **'시애틀시 사회주택개발청'** (Seattle Social Housinng Developer)을 **신설**하려는 **'발의안 135호'** (Initiative Measure 135)가 **시민투표로 통과**되었다.
- '발의안 135호'는 2023년 3월에 시애틀 시장의 서명으로 시행되었다.
- **이 발의안에 따라** 시애틀시 행정부에 사회주택의 개발·소유·운영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주택 개발청이 신설**되었다.
- **사회주택개발청**은 그 법적 지위가 공공기관으로서, **최상위 신용등급**(AAA)의 **채권을 발행**하여 **회전융자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향후, 사회주택개발청은 시애틀시 **지역중위소득**의 0%~120%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사회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 **사회주택의 임차인**은 본인의 **가구 소득 중 30% 미만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차인이 사회주택에 주거한 후 **본인의 가구 소득이 지역중위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퇴거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차인 퇴거 조치 전 분쟁해결절차도 규정한다.

앞에서 살펴본 각 주(州) 입법례의 수혜대상자, 전담기관 및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미국 각 주의 주요 입법례의 특징

구분	수혜대상자	전담기관	특징
뉴욕주	• 저소득층 • 중산층(지역중위소득 80%~165% 해당자)	사회주택개발청 (Social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	- 「유한영리주택회사법」에 따라 비영리 및 영리활동이 가능한 회사 설립
하와이주	•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중위소득 0%~140% 해당자)	하와이주 공공주택청 (Hawaii Public Housing Authority)	- 5년 이상 거주 합의 조건으로 최대 99년의 장기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콜로라도주	• 중산층(저가임대주택 가구의 지역중위소득 80%~120% 해당자)	중산층주택청 (Middle-Income Housing Authority)	-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민간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별도 예산을 편성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 저소득층 • 중산층(지역중위소득 80%~150% 해당자)	주택기회위원회 (Housing Opportunities Commission)	- 관계기관이 회전융자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기금을 운용 - 민간사업자의 임대수익은 기금에 재전입하거나 추가 건설자금으로 사용
워싱턴주 (시애틀시)	•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중위소득 0%~120% 해당자)	시애틀시 사회주택개발청 (Seattle Social Housing Developer)	

□ 시사점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두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중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제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공급의 경우** 공급 대상 주택 중 60%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 나머지 주택만이** 일반공급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해당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

【참고자료】「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가구 인원수별 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천원)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8,514

미국 주법의 중산층 범위에 비해, **우리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중산층 범위가 좁다고 볼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제공되는 주거용 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저가임대주택에 상응**한다. 그러나 **사회주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급자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 대상 수요자의 범위에 중산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주택과는 달라 보인다.**

최근 미국은 **저가임대주택을 대신**하여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에 다각적인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중 **향후 우리의 입법 시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수요증대】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법률에 규정**

【공급확대】 사회주택기관은 민간건설사업자가 **사회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도록 **회전융자기금 설치**

2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국회도서관, 2024-16호, 통권 제242호, 심소연】

◇ **2024년 3월 13일 유럽의회**는 **인공지능**(이하 "AI")에 관한 **포괄적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이 법을 통해 **AI 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은 EU 역내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4단계(**허용 불가능한 위험/고위험/제한적 위험/최소 위험**)로 **분류**하여 **의무 사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시스템 제공자와 배포자의 투명성 의무를 강조**하며 의무 위반 시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또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AI 기술 혁신을 장려한다.

◇ 따라서 EU 역내에서 **AI 제품·서비스 관련 영업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AI 제품·서비스가 「EU 인공지능법」상 어느 위험 단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의무 사항을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초거대 AI의 등장을 앞둔 시대에 AI에 대한 대응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둔** 「EU 인공지능법」은 **국내 입법**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 도입

지난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AI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간의 기본권 관련 피해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EU 인공지능법(안)' 을 제안**하였다.

당시, 규제 대상은 단일 용도에 맞게 학습된 AI 시스템이었으나, 2022년 11월 말에 출시된 오픈AI의 챗GPT와 같은 범용 AI 모델을 포함한 **생성형 AI 관련 규정을 담지 못하였다**. 이에 **2023년 6월 유럽의회**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수정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의회 수정안은 AI를 통한 생체 인식정보의 실시간 이용을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어,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는 **유럽의회 수정안에 반대**하였다. 이후 **세 기관 간 3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EU 인공지능법」**을 **2024년 2월 2일 EU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같은 해 **3월 13일 유럽의회가 가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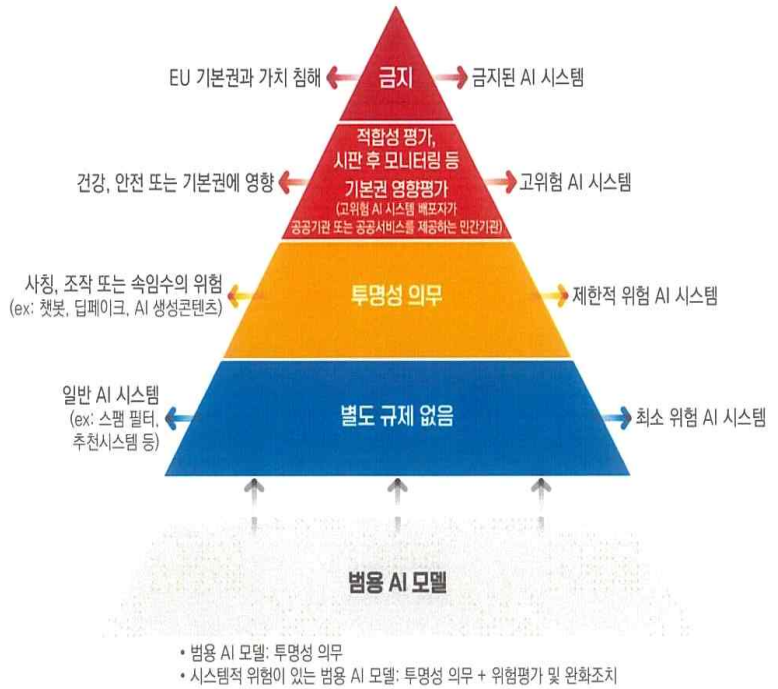
표 1 「EU 인공지능법」 체계

장	제목		조항	시행일
제1장	일반조항		제1~4조	6개월 후
제2장	금지된 AI관행		제5조	
제3장	고위험 AI시스템	제1절 고위험 AI 시스템의 분류	제6~7조	24개월 후
		제2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제8~15조	24개월 후
		제3절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 배포자 및 기타 당사자의 의무	제16~27조	
		제4절 관할 당국 및 신고 기관에 통지	제28~39조	12개월 후
		제5절 표준, 적합성 평가, 인증서, 등록	제40~49조	24개월 후
제4장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제50조	
제5장	범용	제1절 분류 규칙	제51~52조	12개월 후

장	제목		조항	시행일
	AI모델	제2절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의 의무	제53~54조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의 의무	제55~56조	
제6장	혁신 지원 조치		제57~63조	24개월 후
제7장	거버넌스	제1절 EU차원의거버넌스	제64~69조	12개월 후
		제2절 국가관할당국	제70조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제71조	24개월 후
제9장	시판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시장 감시	제1절 시판 후 모니터링	제72조	24개월 후
		제2절 심각한 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	제73조	
		제3절 시행	제74~84조	
		제4절 구제책	제85~87조	
		제5절 범용 AI 모델 제공업체에 대한 감독,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	제88~94조	
제10장	행동 강령 및 가이드 라인		제95~96조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97~98조	
제12장	벌칙		제99~101조	12개월 24개월 (101조)
제13장	최종조항		제102~113조	24개월 후
13개의 부속서			부속서 언급 조항에 따른 시행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①금지된 AI 시스템**, **②고위험 AI 시스템**, **③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④최소 위험 AI 시스템**의 **4가지로 구분**하고 **차등적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적합성 평가**와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가 부과**되며,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에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하고 **저작권이 적용되는 학습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유럽 AI 사무국의 설립과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림 1 위험도에 따른 AI 시스템의 분류 및 차등적 규제



※ 출처: 유럽의회조사처(EPRS: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자료를 재구성

□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EU 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 개발 장소**가 **EU 역내·외인지**를 **불문**하고, **AI 제품**을 **출시**하거나 **서비스**하는 **제공자(provider)**, AI 시스템 개발 장소가 **EU 역내에 위치한 AI 시스템 배포자(deployer)**, AI 시스템 개발 장소가 **EU 역외에 위치**하나 **생산된 AI 제품이 EU 역내에서 활용**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와 배포자, AI 시스템 수입·유통업체 등에 적용**된다(제2조).

- 다만, 과학적 연구만을 목적으로 개발된 AI 시스템, AI 시스템의 출시 또는 서비스 전(前) 연구와 테스트, 그리고 개인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배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AI 시스템의 분류

가. 범용 AI 모델

범용 AI 모델이란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로서 상당한 일반성을 보이고, 모델이 시장에 출시되는 방식과 관계없이 **다양한 고유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하며, **다양한 하위 시스템**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통합**될 수 있는 **AI 모델**을 말한다(제3조제63항). 이 법은 범용 AI 모델 중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을 분류**하고(제51조), 이를 기반으로 만든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며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제한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표 2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제53조)	○ 훈련 및 테스트 과정과 평가 결과를 포함한 기술문서 작성 및 업데이트 ○ EU 및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용 AI 모델을 AI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정보와 문서를 제공 ○ EU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지침(EU)」 2019/790 제4조 ⑶에 따른 권리 유보를 식별하고 준수하기 위한 정책 마련 ○ 유럽 AI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에 따라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 요약서 공개 제공

나. 금지된 AI 시스템

금지된 AI 시스템의 유형에는 ①**인간의 잠재의식** 또는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②**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의 특성**에 **기반**하여 생성·수집된 정보로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e)'를 **도출**하여 **불리한 대우**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③**프로파일링**이나 **성격 특성만**을 토대로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 평가**하는 시스템, ④**직장 및 교육기관**에서 **개인의 감정 추론**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⑤**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생체 인식 시스템**(납치· 인신매매·성적 착취 피해자 및 실종자 수색, 테러 위협 방지, 범죄자 및 범죄 용의자 신원 및 위치 파악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됨) 등이 포함된다(제5조).

다. 고위험 AI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이란 **EU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품·제품으로 사용**되며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AI 시스템** 및 **「EU 인공지능법」 부속서 Ⅲ에 명시된 8가지 목적**(①금지되지 않는 생체인식·분류, ②중요 인프라의 관리·운영, ③교육 및 직업훈련, ④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 ⑤필수 민간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혜택의 향유, ⑥법 집행, ⑦이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 ⑧사법행정 및 민주적 절차)을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제6조).

범용 AI 모델을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고위험 AI 제공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지 않은 채 이미 시장에 출시된 AI 시스템 중 인간의 기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이 고위험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같거나 더 큰 경우,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3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 의무와 배포자의 의무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provider)의 의무(제16조)	• 시스템상에 이름, 상호·상표, 주소 등을 표시 또는 첨부 문서에 표시 • 품질 관리 시스템 보유 •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를 보관 • EU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투입 전 적합성 평가 및 EU 적합성 선언 작성 • 'CE 마크'를 부착하거나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적합성 표시 • EU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필요한 시정 조치 및 필요한 정보제공 • 「지침(EU) 2016/2102」[9] 및 「지침(EU) 2019/882」[10]에 따른 접근성 요구사항 준수 확인 등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deployer)의 의무(제26조)	• 기술적·조직적 조치 및 인적 감독 조치 • 시판 후 모니터링 의무 및 위험 발생 가능성 발견 시,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자 및 관할 당국에 통지 • 고위험 AI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를 보관(최소 6개월) • 사업장에서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 전,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가 국가 공공기관 또는 EU 기관일 경우,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범죄 수사 관련 원격 생체 인식용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는 사법 당국에 사전 승인이 요구됨. 승인된 고위험 AI 시스템과 연결된 개인 데이터의 삭제 • 원격 생체 인식용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국가데이터보호당국에 제출

한편, **고위험 AI 시스템 배포자**(deployer)가 **공공기관이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인 경우에는 **기본권 영향평가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

기본권 영향평가 시 고위험 AI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고위험 AI 시스템 프로세스, 사용 기간 및 빈도, 영향받을 수 있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설명, 인적 감독 조치의 이행 상황, 내부 거버넌스 및 불만 처리 메커니즘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7조).

또한, 고위험 AI 시스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의무**는 표 4와 같다.

표 4	고위험 AI 시스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의무(제23~24조)

구분	수 입 업 체	유 통 업 체
공통 의무	○ CE 마크 부착 여부, EU 적합성 선언 및 사용 지침의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 해당 시스템이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하기 전까지 시장 출시 금지 ○ 해당 시스템이 인간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관할 당국에 통보 및 관련 세부 정보제공	
개별 의무	○ 기술문서 작성 여부 확인 및 보장 ○ 관련 서류 10년 동안 보관	○ 이미 시장에 출시된 이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 추후 발견 시 리콜조치

라.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이란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없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제한적 AI 시스템 제공자와 사용자**는 **투명성 의무**를 갖는다. 즉, **제공자**는 배포자가 해당 시스템의 작동 방식, 기능과 한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판매 시 사용 지침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사용자**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대해 출처를 표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마. 최소 위험 AI 시스템

최소 위험 AI 시스템이란 금지된 AI, 고위험 AI, 제한적 위험 AI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AI 시스템**을 의미한다. **최소 위험 AI 시스템**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다.

3. AI 시스템별 의무 위반 시 벌금

각각의 AI 시스템 관련 해당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표 5와 같다.

표 5	AI 시스템 의무 위반 시 벌금

구 분	대 상	내 용
범용 AI 모델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제공자	○1천5백만 유로(약 22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101조제1항)
금지된 AI 모델	시장에 출시한 제공자	○3천5백만 유로(약 50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7%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3항)
고위험 AI 시스템	관련 의무를 위반한 제공자(대리인 포함), 배포자 및 수입·유통업체	○1천5백만 유로(약 22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4항).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투명성 의무를 위반한 제공자 및 사용자	○관할 당국의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75만 유로(약 10억 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1% 중 더 높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5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제99조제3항~5항에 언급된 금액 또는 비율 중 낮은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됨(제99조제6항).

4. AI 기술 혁신을 위한 조치

EU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하나 이상의 'AI 규제 샌드박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설립을 보장**한다.

EU 집행위원회는 AI 규제 샌드박스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자문 및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관은** EU 기관, 단체, 사무소 및 에이전시를 위한 AI 규제 샌드박스를 설립할 수 있고 **관할 당국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제57조).

회원국은 EU 역내에 사업장을 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AI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우선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이 법의 적용** 및 **관련 자문**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며, 적합성 평가 수수료 책정 시 회사 규모, 시장 규모 및 관련 지표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62조).

□ 시사점

세계 최초로 강제력을 수반한 AI 규제법인 **「EU 인공지능법」**은 최소 위험 AI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 적합성 평가, 기본권 영향평가 및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 **AI 관련 기본 규제 틀을 형성**한다. **특히**, 정보 조작 또는 생체 인식 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AI 남용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AI 기업**과 **개발자**에게 **AI의 사회적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AI 기술 개발 정보**가 **불충분한 유럽 AI 사무국**이 AI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EU 인공지능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위험 평가**와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인 가칭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AI 산업육성 지원**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AI의 **안전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규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EU 인공지능법」**을 **참고**함으로써,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일상화된 AI를 통한 혁신을 도모**하도록 향후 국내 입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1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첫째주	행정안전	○ 지역 내 이주민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2024년 지방행정 트렌드 ○ 중국 전기차 배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사례 연구 및 시사점 ○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 원인의 구조적 분석과 전망 ○ 양회(兩會)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국토교통	○ 독일과 스페인의 교통요금정책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 수요응답형 이동서비스(DRT) 도입방안 ○ 국토·도시 부문 온실가스 감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격년 보고서의 이행사항 점검 결과와 시사점 ○ 해외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주요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EU 인공지능 규제법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및 수요 조사분석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	○ 주요국 미세먼지 저감농업 정책
	기획재정	○ 코로나 19에 대한 성찰적 논의 동향 ○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기획재정, 보건복지	○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외교통일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미 및 시사점 ○ 2024년 중국 양회 분석: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 모색과 종속적 당정관계의 완성 ○ 2024 양회를 전후로 한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추이 분석(중국의 대국외교 추동과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 美 바이든 대통령 2024년 국정연설 분석과 시사점 ○ 3·17 러시아 대선: 푸틴의 압도적 승리, 어떻게 볼 것인가?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첫째주	정보	○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과 국가안보
	외교통일,국방	○ AUKUS안보협력: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
	교육	○ 중등 인문교양교육의 현대적 의미와 교원 역량 ○ 대학교육의 혁신,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현황과 성과
	보건	○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 과제
4월 둘째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농식품 공급망에서의 물가 결정요인 분석 연구 ○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만든다 ○ 국내 타 부분 일자리 지원체계 사례와 농업 일자리 실태조사표본 구축방안
	정보,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 우리나라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 전략 ○ 최근 국가정보 혁신 동향과 정책적 고려사항(AI 대응을 중심으로)
	외교통일, 국방	○ 한미연합군사훈련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과 우리의 대응
	보건복지	○ 저출생 시대, 빈곤아동 정책과 서비스의 재조명
	문화체육관광	○ 캐나다 관광업계 ESG 및 지속가능관광 현황 및 시사점
	국방	○ 초저출산 인구감소시대의 병역제도, 2024 뮌헨안보회의: 승자없는 경쟁과 글로벌 갈등 만연
	기획재정, 행정안전	○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환경노동	○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NBI(Nature-Based Innovation)도입의 필요와 접근 방안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둘째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중앙아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한국의 협력방안 ○ 중국의 멕시코 수출 및 투자 확대와 미국의 대응 ○ 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한 아프리카 핵심 광물 확보 방안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캐나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동향 및 시사점 ○ 독일 전자상거래 시정 개황 및 진출전략 ○ 주목해야 할 글로벌 3대 경제산업 이슈 ○ 일본의 'GX 경제 이행채' 추진 현황 및 시사점 ○ 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의미 ○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과 시사점: 對 신흥국 수출 경기 개선이 중요한 시기 ○ 지식산업센터, 팔방미인에서 동상이몽으로 ○ 인도의 그린수소 개발 관련 국제협력 현황 및 시사점
	외교통일	○ 북핵-인권 연계 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 ○ 인도 하원 총선 전망과 총선 후 경제정책의 향방 ○ 마크롱의 우크라이나 파병 발언 논란과 프랑스-독일 간 갈등 ○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영향 ○ 쿠테타 이후 미얀마의 무장투쟁 현황과 향후 전망
	행정안전	**○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1인2주소제의 새로운 가능성 (전북형 시범 특례와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 지수 개발
	기획재정	○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기 중 미국 국채금리의 국내 파급영향 확대 배경 및 평가 ○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
	국토교통	○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 ○ 베이비부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IP)인식과 주거 수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호라이즌 유럽의 연구데치터 정책과 시사점 ○ 인공지능에 관한 국제규범의 현재와 미래, 주요국의 국제통상협정 및 디지털협정을 중심으로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셋째주	행정안전	○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 아프리카 스마트시티 동향 및 관련 유망 산업 분석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42조원 재정 투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기업결합과 혁신 :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 (2024년) 美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하향식(top-down)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 경쟁력 영향평가
	국토교통	○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보건복지	○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22대 총선 공약 분석 및 시사점
	국방	○ 국방지능정보화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 ○ 주변국 및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개발 경쟁과 대응 방안 ○ 전투 수행의 동기 : 부대 응집력에 대한 소고 ○ 초급간부 선발 시, AI 면접의 발전방향
	기획재정	○ 빅데이터 기반의 국제거시경제 전망모형 개발 연구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 국가전략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 연구 ○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미디어 이용 제한
	환경노동	○ 국내 외국인 구인·구직 시장과 정부의 역할
	환경노동, 행정안전	○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고려한 메가시티별 순환도시 확산전략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4월 넷째주	외교통일	○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진전내용과 과제 ○ 최근 북한의 사회주의 외교 확대 배경 및 의도 ○ (2024년)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바라본 대내외 정책 변화 ○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평가와 함의 ○ 시진핑 3기의 중국 정치 : 중국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변화와 함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 (2024) KIAT 10대 유망산업 : 협력경쟁 시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신성장을 창출하는 유망산업 ○ 아이디어·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연구 ○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방향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향 ○ 농업·농촌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강화 방안 ○ 농가경제조사 개선을 위한 과제 ○ 농업인력 부족과 대응(베이비부머 농업 활용을 위한 과제)
	교육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대안교육은 어떻게 다변화되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행정안전	○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외교통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기획재정 외교통일	○ (2024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외교통일 보건복지	○ 첨단 바이오 기술의 안보적 도전과 전략적 고려사항
	국토교통	○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의 단계별 운영방안
	보건복지	○ 일본 바이오 산업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 고찰
	과학기술정보 통신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정책 운영 및 현안 대응 ○ 생성형 AI 기술의 진화방향과 정책과제
	환경노동	○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 : 사업 참여 청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2 의회 도서 자료실 신착 도서(1차) 목록

※ 2024년 3월 신착 도서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도서는 자료실에서 대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순	도 서 명	지 은 이
1	**지방의정백과. 1**, 예산결산·세입	나라살림연구소
2	**지방의정백과. 2**, 예산결산·세출	나라살림연구소
3	**지방의정백과. 3**, 행정사무감사	나라살림연구소
4	**지방의정백과. 4**, 자치법규	나라살림연구소
5	**지방의정백과. 5**, 의회운영	나라살림연구소
6	(교실 밖의 정치학) **우리가 만든 조례**	강우창, 안이삭, 이은진[공]
7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법제처
8	**로컬의 신**: 서울을 따라 하지 않는다	이창길
9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임명현
10	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	이재인
11	**축소되는 세계** :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앨런 말라흐 ,김현정옮김
12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	김민식
13	**지방, 청년, 미래** : 지방소멸 시대 청년의 삶과 미래를 말하다	서동용
14	**지방소멸은 없다** : 농어촌기본소득이 만드는 변화	이재욱
15	**도시×리브랜딩** : 도시다움을 만드는 새로운 변화	박상희, 이한기, 이광호[공]
16	**지역소멸시대 로컬담론** : 지역소멸시대 지역에 사는 이의 로컬살이 담론	전영철
17	**재난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 재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송재빈
18	**개혁의 정석** : 교육·인구·노동·연금·조세·정부개혁의 성공 공식	전주성
19	**국가 시스템 개혁** : 미래 도약을 위한 정통 경제관료의 국가혁신 제안	최종찬

순	도 서 명	지 은 이
20	**주민모임으로 지역 조직화 쉽게 하기** : 단절의 시대 속 사회적 고립을 막는 사회복지 실천	이재욱, 한수지 [공]저
21	내 기부금,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나요	권오용
22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 : 영 케어러와 홈 닥터, 각자도생 사회에서 상호의존의 세계를 상상하다	조기현, 홍종현
23	**이기는 정치학**: 현실주의자의 진보집권론	최병천
24	**선거정음**: 정현태의 정치인문학	정현태
25	국가이성론	조반니 보테로 ,곽차섭 옮김·주역
26	**더 리더** : 박용진의 미래를 향한 도전	박용진
27	**정치 내전** : 민주주의를 구하라!	유창오
28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부정선거의 미래와 정치개혁	윤석남
29	Vote People 정치인들은 알려주지 않는 정치이야기	김금비, 이도현 [공]
30	**처음 시작하는 정치 공부** : 풍요로운 삶을 위한 정치-시민되기	박정원
31	**지역정당** : 거대 양당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세상을 바꾸는 정치	윤현식
32	**디지털 미래한국 새 판을 짜자** : 33년 공직자의 대한민국 리부팅 전략	김정렬
33	**지방을 살리는 조용한 혁명** : 고향사랑기부제의 현재와 미래	현의송
34	**좋은 문화행정이란 무엇인가** : 예술인·기획인·행정인 부족의 가치충돌	장석류
35	**공무원으로 살아남기** : 나는 박봉에도 대출 없이 기부하며 미래를 꿈꾸며 산다	김수연
36	쉬운 공문서 쓰기 길잡이	국립국어원
37	**미래 법정**: 미래에서 온 50가지 질문	곽재식
38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 펜타곤 출입기자가 파헤친 미국의 본심	김동현
39	**슬기로운 미국생활** : 문화적, 제도적 차이를 넘어 미국에서 슬기롭게 살아남는 법	황승완
40	**중동 인사이트**: 세계의 판도가 바뀐다	이세형

순	도 서 명	지 은 이
41	(2024 12th Edition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계법령**: 해설편	김창환 편
42	**시선의 발견** : 기획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그곳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기회가 숨어 있다	임영균
43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부를 끌어당기는 글쓰기**	부아c
44	**마인드셋** : 스탠퍼드 인간 성장 프로젝트	캐럴 드웩 , 김준수 옮김
45	**청렴을 재다** : 인사검증과 감찰	권오현
46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통	Sanjiv Jaggia 외 저, 장혜정 외 옮김
47	**크립토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 : 블록체인, 토큰경제와 탈중앙화의 길	박종백
48	**디지털자산 시대가 온다** : 웹 3.0 시대에 탄생하는 부의 역전 기회	서병윤 외
49	**나는 주식으로 월급 두 번 받는다** :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흐름 창출법	공돌투자자
50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 국민이 알면 정부가 싫어할 당신의 국민연금 이야기	유원중, 원종현 ,김우창
51	**챗GPT의 두 얼굴** : 인공지능이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금준경, 박서연
52	어떤 양형 이유	박주형
53	**임포스터** : 가면을 쓴 부모가 가면을 쓴 아이를 만든다	리사 손
54	**죽음이 품격을 입다** :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송길원
55	**군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남성성 #젠더 #퀴어 #동물 #AI	김엘리 외
56	**미국의 전략문화와 한반도 개입정책** :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미국의 개입정책 분석	하성우
57	**해커의 심리** : 사회 규범과 정의를 왜곡하는 사회적 해킹의 실체를 폭로한다	브루스 슈나이어, 김상현 옮김
58	**R로 배우는 텍스트 마이닝** : 타이디텍스트(tidytext)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	줄리아 실기 ; 데이비드 로빈슨 [공]
59	(지속 가능한 출판을 위한) **교정·교열·윤문의 시작**	이다겸
60	**갑질 알기. 1**, 그런 줄도 모르고	이하배
61	**정원의 철학자** : 자라난 잡초를 뽑으며 인생을 발견한 순간들	케이트 콜린스 ,이현옮김

순	도 서 명	지 은 이
62	나는 반항한다, 고로 철학한다	키아라 파스토리니 글, 페르스발 바리에 그림
63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 쇼펜하우어 소품집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박제현 옮김
64	피노키오로 철학하기	조르조 아감벤, 박문정옮김
65	**난임과 유산에 대처하는 심리 가이드** : 인지행동치료 전문가가 제안하는 마음 회복 10단계	에이미 웬젤, 이승재 외 공역
66	**출근길 심리학** :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을 위한 33가지 마음의 법칙	반유화
67	**오십, 삼국지가 필요한 시간** : 난세의 영웅들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만나다	은파
68	(조용헌의) **내공** : 인생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	조용헌, 김상수사진
69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 오늘이 불안한 요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4대 종교 성직자의 행복 수업	성진 [외]
70	**제3의 신** : 神이 없다면 우린 행복할까?	앤서니 T. 크론먼, 이재학 옮김
71	**경이로운 부재** : 삶의 한가운데에서 해탈하기	제프 포스터, 심성일 옮김
72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 : 자현 스님 산중일기	자현, 불광미디어사진
73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정찬주
74	여섯 걸음	원유경
75	**개념으로 산다** : '개그맨의 생각'에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생각'으로	최형만 저
76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과학 이야기**	이송교
77	**미래의 기원** : 우주의 탄생부터 인류의 미래까지 이광형 총장이 안내하는 지적 대여정	이광형
78	**R 기반 데이터 과학** : 타이디버스(tidyverse) 접근	백영민
79	**시간의 기원** : 스티븐 호킹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이론	토마스 헤르토흐, 박병철 옮김
80	**우리 우주의 첫 순간** : 빅뱅의 발견부터 암흑물질까지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문제들	댄 후퍼, 배지은옮김
81	**화석이 말하는 것들** : 죽고 사라진 것들의 흔적에 관하여	이수빈
82	(생태시민을 위한) **동물지리와 환경이야기**	한준호,배동하,이건

순	도 서 명	지 은 이
83	(만화로 보는)**멸종과 진화**	김도윤 글·그림
84	**바다의 제왕** : 두족류, 5억 년의 비범한 진화 이야기	대나 스타프, 박유진옮김
85	패널데이터와 복합표본을 활용한 한번에 적용하는 의학 보건통계	히든그레이스 데이터분석팀
86	**의료산책. 1, 광장으로 나온 의료** : 법의학자, 생명의 가치와 윤리를 묻다	김장한
87	**지킬박사 농업 하이드도 샘낸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	김육곤
88	**다중위기시대 국가식량디자인** : 기후위기 식량위기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국가 경영전략 모색	백혜숙
89	**돈벌러 농촌으로 갑니다** : 서울대 농경제 박사수료생의 당찬 스마트팜 도전기	강윤영
90	(미래드림과 함께하는) **농업법인과 농지 이야기**	김학송, 박민수
91	**무엇이 개를 힘들게 하는가!** : 문제행동으로 힘들어하는 반려견과 가족을 위한 책	권기진
92	**행복해지려면 도시를 바꿔라** : 행복한 도시를 위한 46가지 제안	강양석 외
93	**도시수업 탄소중립도시** : 도시는 왜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가	김정곤, 최정은[공]
94	**정치는 어떻게 과학의 팔을 비트는가** : 기후 낙관론에 맞선 세계적인 환경과학자의 폭로	루이스 지스카, 김보은옮김
95	(과학을 기반으로 살펴보는)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그리고 탄소중립**	송철한
96	**집생각** : 나를 나답게 만드는 집의 사용법	김대균
97	**도시논객** : 우리 사회를 읽는 건축가의 시선	서현
98	고딕 성당, 거룩한 신비의 빛	강한수
99	**교양으로 읽는 반도체 상식** : 비즈니스로 보는 반도체의 과거, 현재, 미래	고죠 마사유키, 정현옮김
100	차세대 반도체	석민구, 신창환, 권석준[공]
101	**패션 앤 아트**	김영애
102	(조합이 즐겁다!) **코바늘 뜨개질의 패치워크 크로셰**	애플민츠, 김수연옮김
103	Diana's easy table : 순식간에 만드는 마법 같은 한식 레시피	다이아나 강

순	도 서 명	지 은 이
104	(좌절내구력 강한 아이로 키우는) **조선미의 초등생활 상담소**	조선미
105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 세계적 가족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의 15가지 양육 법칙	버지니아 사티어 , 강유리 옮김
106	**초등입학 데일리북** : 베테랑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똑똑한 입학준비	김성효
107	**예술이 필요한 시간** : 전시 디자이너 에세이	이세영
108	**에디토리얼 씽킹** : 모든 것이 다 있는 시대의 창조적 사고법	최혜진
109	예술에 대한 여덟 가지 답변의 역사	김진엽
110	**북유럽 미술관 여행** : 자연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북유럽 미술관을 가다	이은화
111	**제4의 벽** :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 박신양과 철학자 김동훈의 그림 이야기	박신양, 김동훈[공]
112	단순한 그림 단순한 사람 장욱진	정영목
113	**오늘도 스마트폰으로 인생사진을 찍습니다** : 평범한 일상을 화보로 만들어주는 책	방쿤
114	**명랑골프는 없다** : 주말골퍼가 쓴, 주말골퍼를 위한 책	박인호, 방호일, 박해건
115	**향문천의 한국어 비사** : 천 년간 풀지 못한 한국어의 수수께끼	향문천
116	**당신은 우리말을 모른다. [1]**: 문법 편	엄민용
117	**당신은 우리말을 모른다. [2]**: 어휘 편	엄민용
118	(이디엄으로 배우는) **찐 미국 사람 영어회화**	로라
119	(키위엔) **영어회화** : 하루 5분의 기적	박강준
120	**제시카의 힙한 톡톡 영어 표현** : 미국 찐친들과의 현실 영어 회화	제시카 황
121	(뚝딱! 세계 명작으로 시작하는) **두 줄 글쓰기** : 저절로 써지는 마법의 초등 글쓰기	김성효 글
122	**별의 길** : 시집	양세형
123	**분지의 두 여자** : 장편소설	강영숙
124 -125	**살인자의 쇼핑몰. 1. 2권**: 장편소설	강지영

순	도 서 명	지 은 이
126	**무탈한 하루에 안도하게 됐어** : 장편소설	라비니야
127	**노량**: 최후의 바다 : 장편소설	박은우
128	**수상한 한의원**: 장편소설	배명은
129 -130	**원경. 1. 2권** : 장편소설	서자영
131	**세인트 헬레나에서 온 남자** : 역사소설	오세영
132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 : 장편소설	윤정은 글
133	**마지막 마음이 들리는 공중전화** : 장편소설	이수연
134	**광인** : 장편소설	이혁진
135	**시차와 시대착오** : 소설	전하영
136	**지구 생물체는 항복하라** : 연작소설집	정보라
137	**자본주의의 적** : 소설집	정지아
138	**여우의 계절** : 귀주대첩, 속이는 자들의 얼굴	차무진
139	**천 개의 파랑** : 장편소설	천선란
140	(자유와 진실을 향한 외침)**장하리**	추미애
141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 : 산문	공지영
142	**꽃이 사람이다 :** 산문집 : 꽃 내음 그윽한 풀꽃문학관 편지	나태주
143	**또 못 버린 물건들** : 산문	은희경
144	(당신의 삶을 떠받치고 당신을 살아가게 하는) **보편의 단어** : 산문집	이기주
145	감성사전	이외수
146	**고통 없는 사랑은 없다** : 산문집	정호승
147	**푸바오, 언제나 사랑해** : 슈푸스타 푸바오와 바오 가족 이야기	에버랜드 동물원 글·사진

순	도 서 명	지 은 이
148	**해방의 밤** : 당신을 자유롭게 할 은유의 책 편지	은유
149	잃어버린 길 위에서	이선영
150	**유퀴즈에서 만난 사람들** : 에세이 : 모든 사람은 한 편의 드라마다	이언주
151	**공부하는 사람, 이현옥** : 앎이 볕처럼 스며들던 시간에 관한 기록	이현옥
152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줄까** : 에세이 : 인생의 1순위는 언제나 나여야만 한다	홍현태 글
153	**격정세계** : 장편소설	찬쉐, 강영희옮김
154	**귀신들의 땅** : 장편소설	천쓰홍, 김태성옮김
155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 노인들의 일상을 유쾌하게 담다. 실버 센류 모음집	사단법인 전국유료실버타운협회 포푸라샤 편집부
156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 장편소설	무라카미 하루키, 홍은주 옮김
157	오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쿠라이 미나, 현승희옮김
158	금단의 마술	히가시노 게이고, 김난주 옮김
159	**이처럼 사소한 것들** : 소설	클레어 키건, 홍한별옮김
160	**사라진 것들** : 소설	앤드루 포터, 민은영옮김
161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입니다** : 가장 경이로운 세계 속으로 숨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패트릭 브링리, 김희정외[공]옮김
162	**프랭키** : 장편소설	요헨 구치, 막심 레오, 전은경 옮김
163 -164	천사들의 제국. 1. 2권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세욱옮김
165	**평범한 인생**: 장편소설	카렐 차페크 ,송순섭옮김
166	**이주하는 인류** : 인구의 대이동과 그들이 써내려간 역동의 세계사	샘 밀러 ,최정숙옮김
167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 : 하버드대 마틴 푸크너의 인류 문화 오디세이	마틴 푸크너 ,허진옮김
168	고대·교역·도시 그리고 가야	남재우 외
169	**조선 왕 연대기** : 조선을 뒤흔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사건 80	유정호

순	도 서 명	지 은 이
170	**잘못 쓰인 한국사의 결정적 순간들** : 당신이 몰랐던 반쪽짜리 한국사	최중경
171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중국의모든것**: 마르크스주의 관점	이정구
172	**상하이의 유대인 제국** : 유대 기업은 현대 중국의 탄생에 어떻게 기여했나	조너선 카우프만, 최파일 옮김
173	(1400년 중동의 역사와 문화가 단숨에 이해되는) **세상 친절한 이슬람 역사**	존 톨란, 박효은옮김
174	**무계획 워홀러의 900일 여행기** : 동서양 18개국 98개 도시를 누비며	기용주
175	**꿈꾸던 해외, 잠시만 살아볼까** : 이민/워킹홀리데이 해외살이 안내서	김민욱
176	(급할 때 바로 써먹는)**1초 여행 꿀팁**	신익수
177	**해파랑길 인문 기행** : 동해 바닷가 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신정일
178	한 달 살기 가이드북, 동남아시아	조대현 글·사진
179	일천시간 너머의 유럽여행	이선비, 김형우사진
180	**전주·완주** :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신정일
181	**지도의 역사** : 지도로 그려진 최초의 발자취부터 인공지능까지	맬컴 스완스턴, 알렉산더 스완스턴 [공], 유나영 옮김

Ⅴ. 법령 해석 사례

Ⅴ. 법령 해석 사례

1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할 때 고려되는 요소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인정기준 [「지방재정법」 제29조 관련] 【법제처 23-1178, 2024. 4. 18., 경기도】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총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하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 **회답**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 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이유**

먼저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총액 등 금액의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의미나 그 인구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136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제162조)하고 있는바, **「지방재정법」은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적절한 재정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

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과의 관계에 있어 **일반법 또는 기본법의 지위에 있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이 징수하는 광역시·도세의 일정 비율을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고,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시·군에 배분**함으로써 **관할 시·군의 재정균형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13호로 「지방재정법」을 일부개정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로 신설·도입되어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도로서, 같은 항에서 조정교부금의 확보에 있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의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취지**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는 등 그 행정사무 수행 범위가 넓고**, 더 많은 인구수로 인해 **관할구역 내 행정수요가 복잡·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재정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에 둘 수 있는 **일종의 특례**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인구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소를 두거나 실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 광역시세·도세를 직·간접적으로 납부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러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도 예외 없이 충실히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 많은 인구수로 인해 관할구역 내 행정수요가 복잡·다변화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시·군보다 더 높은 재원 확보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다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려는 **같은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모든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판단기준**을 **각 시·도마다 달리할 수 있다고** 본다면, 특정 시가 어느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비율이 달라지는 등 「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 확보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집행되지**

못하여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 인구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9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이 사안 **인구인정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서의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 ④ (생 략)

「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②·③ (생 략)

3. ~ 5. (생 략)

④·⑤ (생 략)

2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이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의 범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관련

【법제처 24-01060, 2024. 4. 12., 환경부】

□ 질의요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함)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러한 금지행위의 하나로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폐교재산**을 **야영장 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유

먼저 「수도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행위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한편, **폐교활용법 제10조**에서는 특별시장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교활용법 제10조**가 「수도법」 제7조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7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7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도 시장 등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가 「수도법」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야영행위'를 위해 제공되는 건축물로의 용도변경 행위는 「수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허가 대상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 **폐교재산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한 특례 역시**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까지 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되는 구역으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 등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제3항)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 등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제4항)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고, **폐교재산법 제10조**는 폐교재산 학생 수의 감소 및 학교의 통·폐합 등으로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중 폐교재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제도의 취지와 특례규정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폐교재산법 제10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가 「수도법」 제7조제3항제2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여 폐교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생 략)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3. (생 략)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2. (생 략)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3. ~ 5. (생 략)

②·③ (생 략)

3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3-1050, 2024. 3. 28., 진안군】

□ 질의요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함)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라 함)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는지?

□ 회답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단체"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장애복지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통상적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 등**을 **의미**하므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어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으로 한정되는 개념이라 볼 수 없는 한편**, 「장애인복지법」에는 **"비영리법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 규율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제59조의11제4항), 같은 법 제63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거나 '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단체만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장애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에 제32조의2가 신설되어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취지라 할 것인데,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제6호)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등 그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록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실적 및 계획, 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기여도, 운영비 교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Ⅵ.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Ⅵ.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18년까지 항·포구(2,400여 개)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투자·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의 **투자 우선순위가 타 분야(농업, 관광 등)보다 후 순위로 밀려 체계적인 투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8. 6. 28.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같은 해 8. 27.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의 하나로 **3조원의 예산을 300개소의 소규모 어촌·어항에 투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2019년 8월**에서야 **「어촌·어항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를 **신설**하여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준비가 미흡**했고 **단기간에** 다수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체계 미비**,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족**, **예산집행률 저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와 언론**에서 **사업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체계** 및 **개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재검토**를 **유도**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어촌뉴딜300사업 시행 전반을 점검하되, 특히 사업지 선정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 등 11개 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시행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표 1] 분야별 주요 감사중점

분야	주요 감사중점
1. 사업지 선정평가	▪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사업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는가?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시설계획에 적정 수요를 반영하고 운영관리계획은 제대로 마련되었는가? ▪ 국고보조금 집행과 사업 성과물의 사후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2022. 9. 14.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언론보도 사항, 국회 논의사항,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수집・분석하였고 2022. 11. 21.부터 2023. 3. 31.까지 50일간 감사인원 2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2023. 5. 15.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였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처리 대책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후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4. 2. 2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업무 현황

1.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개요

해수부는 **현재 어촌**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낙후된 접근시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림 1]과 같이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 시설 현대화,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 어촌·어항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개요

비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혁신어촌 구현		
목표	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추진방향	가기 쉬운 어촌	찾고 싶은 어촌	활력 넘치는 어촌
	여객선이 입·출항하는 소규모 항·포구의 열악한 해상교통 인프라 혁신으로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 강화	어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해 활력 제고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어촌 자생력·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토대 마련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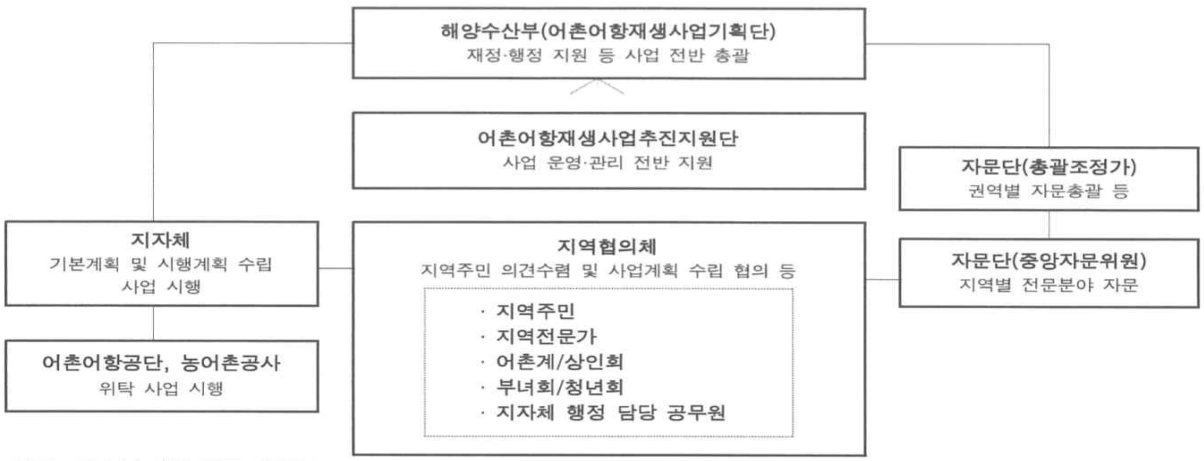
2.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체계

해수부는 2018. 3. 15.「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운영규정」에 따라 어촌뉴딜300사업 종합대책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조직으로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두었다가 2020. 12. 29.「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4조의2 등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해수부는 [그림 2]와 같이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별도로 두어** 어촌뉴딜300사업의 **운영·관리 지원**, **자문단 구성·운영**,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지역계획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현장체감형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을 **상시 지원**하고 지역 내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사업지별로**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협의, 시설물 운영 방안 협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림 2]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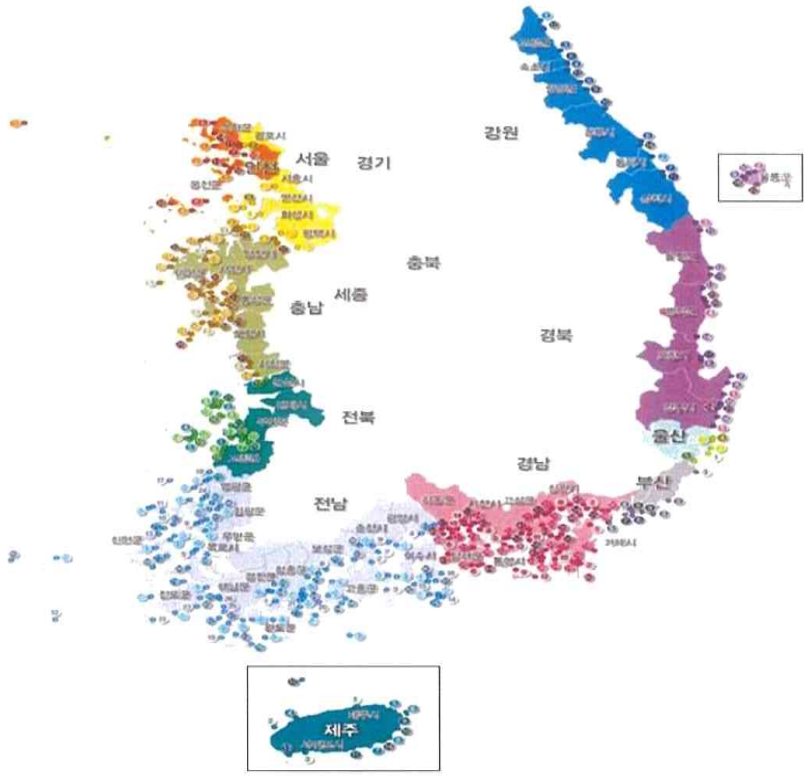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어촌뉴딜300사업은 관련 **주체 간의 협업과 협력 관계를 핵심 요소**로 하는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거와 같은 관 주도의 하향식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3. 어촌뉴딜300사업 현황

해수부는 매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계획을 공고하여 각 지자체로부터 관내 어항을 대상으로 지역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공모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공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2019년도 70개소, 2020년도 120개소, 2021년도 60개소, 2022년도 50개소** 등 **300개의 사업지를 선정**하였는데 지역별 사업지 분포 현황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지역별 사업지 분포 현황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어촌뉴딜300사업은 **1개 사업지당 최대 150억 원을 지원**(국비 70%, 지방비 30%)하는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해수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으로 [표 2]와 같이 2019년에 국비 1,715억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까지 2조 8,964억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23년 3월 말 현재** 2019년도 사업지 70개소 중 54.3%인 **38개소의 사업이 준공**되었다.

[표 2] 어촌뉴딜300사업 연도별 예산

(단위: 억 원)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2024년
계	28,964	2,450	6,133	7,150	6,959	6,272
국비	20,275	1,715	4,293	5,005	4,871	4,391
지방비	8,689	735	1,840	2,145	2,088	1,881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은 **기능별 사업 내용**에 따라 [표 3]과 같이 ① **기항지 개선, 어항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 등**이 포함된 **공통사업**, ② **지역 어업인**의 **정주 여건**과 **경관 개선 등** 관광진흥사업이 들어가는 **특화사업**, ③ 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마케팅 등**을 **수행**하는 지역역량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등과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 등 **3개 사업군으로 분류**되는데 예산 비중은 공통사업이 53.8%, 특화사업이 40.2%, 소프트웨어사업이 6.0%를 차지한다.

[표 3] 어촌뉴딜300사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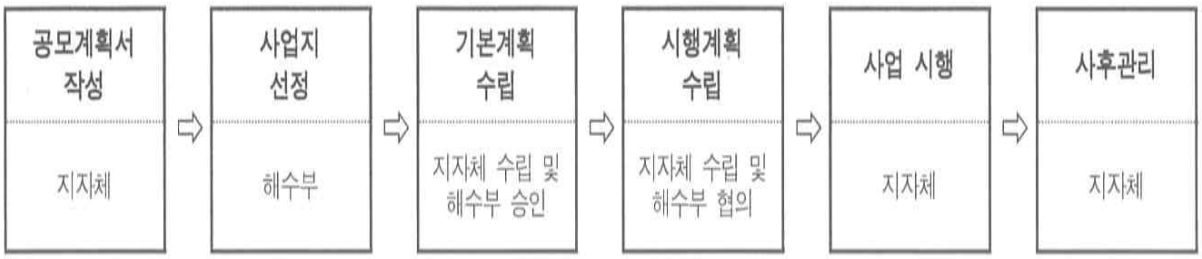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통사업	기항지 개선	여객선 외곽시설	방파제, 돌제
		여객선 계류시설	선착장, 물양장, 선양장, 잔교, 부잔교
		여객 편의시설	여객선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
	어항시설 정비	외곽시설	방파제, 파제제, 방사제, 방조제, 호안 등
		계류시설	선착장, 여객선 선착장, 물양장, 선양장, 잔교, 부잔교
		기능 편익시설	어선건조·수리장, 어구건조·수리장, 공동작업장 등
		기타 어항시설	준설, 옹벽, 파도막이, 선양기, 등대, 해수소통구
	안전시설 정비	안전시설	안전난간, CCTV, 인명구조함, 계선주(비트) 등
특화사업	정주 개선	주거 개선	쓰레기 집하장, 정거장, 마을정비
		문화복지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관리사무소, 교육시설 등
	관광 진흥	경관개선	공원광장, 수풀림 조성, 경관시설, 도로(차량) 등
		관광레저	수산물 가공장, 휴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
소프트웨어사업	지역역량강화, 지역협의체 운영		교육, 워크숍 및 인력양성, 브랜드 개발, 자문비 등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4.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절차

어촌뉴딜300사업은 크게 ① 공모계획서 작성, ② 사업지 선정,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④ 사업 시행 등 순으로 추진되고 세부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절차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Ⅲ.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 4]와 같이 사업지 선정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분야 등에서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표 4] 분야별 지적사항 현황

구 분	계		징계·문책 (인원)	주의	통보
사업지 선정평가	2	-	-	1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7	-	-	4	3
기타	4	3	1(3)	1	2
계	13	3	1(3)	6	5

분야별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지 선정평가 분야)

해수부는 공식적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 목표인 **지역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균형과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절차 종료 후**에 **평가점수를 수정**하여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타당성 평가 미흡**으로 **다수**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앞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 체계를 미리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분야)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특화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승인**하거나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자체에서 **개별사업 명목만 유지한 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본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 재량범위를 조정하도록 통보하였다.

그리고 **신안군**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중 **94억여 원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집행**한 후 **해수부**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해수부**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기타)

어촌어항공단은 죽도항의 주요사업인 긴급방재로 조성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습지행위허가**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준공**처리하였으나 **해수부의 습지행위 허가 신청 반려**로 전체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미 체결한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Ⅳ.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1. 사업지 선정평가 분야

[실태]

가. 공모계획서 평가항목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공모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표 5]와 같다.

[표 5] 단계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단계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단계 시·도평가	시·도평가	시·도 종합평가	5
2단계 서면평가	개발여건	성장 잠재력, 추진체계 구축, 사업추진 의지	13
	기본구상	비전·전략의 적절성	5
	사업계획	세부 사업계획의 적절성, 타 부처 연계사업, 사업비 투자계획 및 예산 조기 집행 방안, 운영관리계획	31
	사업효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및 삶의 질 개선	6
3단계 현장평가	현장평가	사업추진 의지, 현지 사업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40
4단계 종합평가		1~3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사업지 선정, 필요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

자료: 2021년도 공모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 발췌

해수부는 수산・관광・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0명으로 인력풀(Pool)을 구성하여 이 중 전문가 63명과 해수부 공무원 12명 등 75명을 서면 및 현장평가단으로 위촉하고, 전문가 6명과 해수부 공무원 5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나. 사업지 선정 현황

해수부가 단기간 내 1개 사업지 당 최대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어촌뉴딜300사업 공모계획을 공고하자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있던 각 지자체는 가능한 한 많은 사업지가 선정되도록 전력을 다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표 6]과 같이 각 지자체는 300개 사업지 공모에 815개소의 공모계획을 신청하여 평균 2.72: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특히

2021년도와 2022년도의 경쟁률은 각각 3.93:1 및 3.74:1로 경쟁이 **치열**하였고 상대적으로 항·포구가 많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관내 사업지가 **각각 98개소** 및 **57개소**로 **전체 사업지의 51.7%**를 차지하였으며 지자체 기준으로는 신안군 관내 사업지가 14개소로 가장 많다.

[표 6] 연도별 사업지 공모 및 선정 현황

(단위: 개소, %)

시·도	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공모	선정	공모	선정	공모	선정	공모	선정	공모	선정
계	815	300	142	70	250	120	236	60	187	50
부산	26	9	4	1	8	4	6	2	8	2
인천	35	16	7	5	10	5	12	3	6	3
울산	14	5	3	1	3	2	4	1	4	1
경기	16	8	3	1	6	5	4	1	3	1
강원	27	14	3	2	9	5	9	4	6	3
충남	103	33	13	6	36	14	29	6	25	7
전북	49	22	6	5	16	9	15	5	12	3
전남	264	98	56	26	70	37	72	19	66	16
경북	68	24	6	5	31	11	19	5	12	3
경남	171	57	37	15	50	23	50	11	34	8
제주	42	14	4	3	11	5	16	3	11	3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해수부**는 [표 7]과 같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어항 선정과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하여 **특정 어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된다면 **공모사업의 취지에 배치**되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외부적**으로 **사업지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표 7] 특정 어항 선정과 예산 증액요구 관련 해수부 답변내용

회의 일자	질의 내용	답변 내용
2018. 11. 14.	▪ 강릉시, 동해시, (강원)고성군 등의 특정 어항 선정 및 예산 증액요구	▪ **(차관 김양수)** 특정 지역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공모사업의 취지와 배치되므로 수용하기 곤란
2019. 11. 7.	▪ 경상북도 5개 시·군, 대부도 등의 어항 선정 및 예산 증액요구	▪ **(차관 김양수)** 어촌뉴딜사업은 공모사업이므로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
2020. 11. 10.	▪ 거제시 여차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전항 등 선정 및 예산 증액요구	▪ **(차관 박준영)** 어촌뉴딜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후 공모를 통해 지역이 확정되므로 특정 지역을 위한 예산은 수용하기 곤란
2021. 11. 4.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항 등 선정 및 예산 증액요구	▪ **(차관 엄기두)** 어촌뉴딜사업은 공모사업이므로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

자료: 국회 회의록 중 일부 내용 발췌

[문제점]

감사결과 요지

▪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지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제대로 마련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 공식적으로 지역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방법과 절차 등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지역균형과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절차 종료 후에 평가점수를 수정하여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타당성 평가 미흡으로 다수의 사업계획 변경 초래

가.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 미비

1) 업무 개요

해수부는 2018. 9. 13. **2019년도 사업지 선정 공모계획**을 **공고**한 후 부산광역시 기장군 등 54개 지자체로부터 142개소의 공모 신청을 받고 같은 해 12. 17.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소무의항 등 70개소를 선정하는 등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00개 사업지**를 **선정**하였다.

2) 판단기준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개 사업지당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300개 사업지에 **약 3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해수부**의 **대표적인 재정사업**이다.

그리고 3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이 되는 어촌·어항이 70여 개 지자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으로 그동안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던 **각 지자체**는 어촌 뉴딜300사업을 기회로 대규모 국고 예산

(사업비의 70%)을 지원받아 **관내 낙후된 어촌·어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표 8]과 같이 공모 신청과 **사업지 선정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8] 연도별 공모 신청 현황

(단위: 개소, 개)

연도	사업지(A)	공모 신청 지자체	공모 신청지(B)	경쟁률(B:A)
2019	70	54	142	2.03:1
2020	120	58	250	2.08:1
2021	60	57	236	3.93:1
2022	50	54	187	3.74:1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높은 공모 신청지가 **사업지**로 **선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지 선정을 위한 **평가 체계**를 **제대**로 **마련**한 후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정책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 미비

그런데 해수부는 [표 9]와 같은 평가절차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도 사업지 선정평가를 실시하면서 **매년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지 선정 평가계획** 등에 어촌 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균형발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의결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을 뿐 공식적으로 지역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매년 공모 신청지 전체를 대상으로 **조별 평가단**을 **구성**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사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평가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9] 사업지 선정 평가단계 및 배점

(단위: 점)

구분	평가자	배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시·도평가	시·도	-	3	5	5
서면평가	해수부 (평가단)	80	57	55	55
현장평가		20	40	40	40
종합평가	해수부(평가위원회)	가산점	가산점	가산점	가산점

자료: 2019년도~2022년도 공모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 재구성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사업지 선정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던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지 선정 과정을 점검한 결과, **해수부**는 2019년도 및 2020년도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균형**과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 반영**을 **명목**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하여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있어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균형을 고려한 사업지 선정이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서도 공모 가이드라인 등에 제시된 평가기준을 따를 경우 어촌뉴딜300사업의 정책목표인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등 지역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는 사유로 [표 10]과 같이

평가절차 진행 전이나 진행 중에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인 사업지 선정 계획을 미리 작성**하거나 **평가절차 종료 후**에 **해수부 소속 내부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한 후 **형식적**으로 **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2021년도 및 2022년도 사업지 임의 조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2021년도 사업지 선정	자체 선정계획 작성	▪ 평가절차 진행 중에 지자체별 최대 2개소 선정 등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평가 중 주요 핵심사항 보고」와 「지역균형을 고려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 대상지 검토」 문건 작성 - 신규 대상지 검토 문건에는 지자체별 최대 2개소로 하되 46개 지자체의 특정 어항 60개소에 'O'로 표기한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계획」 포함 * 가하당 및 나가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관내에 각각 27개 및 33개 배분 계획
	평가점수 수정	▪ 사업지로 추가 선정해야 할 공모 신청지는 내부평가위원의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점수를 올리는 대신 지역별로 사업지가 편중된 경우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시뮬레이션 실시 - 236개소의 평가결과 순위를 조정한 후 해당 내부평가위원(18명)의 평가표를 다시 작성한 다음 평가위원회에 2021년도 사업지 선정(안)을 상정하여 확정
	사업지 조정결과	▪ 당초 평가결과 순위가 60위 이내인 24개소가 제외된 대신 60위 밖인 24개소가 추가로 선정 - 60개 사업지 중 44개소는 자체 선정계획에 'O'로 표기된 어항과 동일하고 사업지가 지자체별 최대 6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하면서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33개에서 47개로 증가 * 가하당 및 나가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관내에 각각 30개씩 배분
2022년도 사업지 선정	자체 선정계획 작성	▪ 평가절차 진행 전에 40개 지자체에 50개 사업지를 배분하는 내용의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계획(안)」 작성·관리 * 가하당 및 나가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관내에 각각 25개씩 배분 계획 - 평가절차 진행 중에 국회의원 등의 요청사항을 정리하고 비고란에 사업지 선정 가능 여부를 'O' 또는 'X'로 표기한 문건을 작성·관리
	평가점수 수정	▪ 2021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186개소의 평가결과 순위를 조정한 후 해당 내부평가위원(24명)의 평가표를 다시 작성한 다음 평가위원회에 2022년도 사업지 선정(안)을 상정하여 확정
	사업지 조정결과	▪ 당초 평가결과 순위가 50위 이내인 22개소가 제외된 대신 50위 밖인 22개소가 추가로 선정 - 31개 지자체의 38개 사업지는 자체 선정계획의 지자체별 사업지 수와 동일하고 사업지가 지자체별 최대 5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하면서 사업지가 선정된 지자체는 28개에서 40개로 증가 * 가하당 및 나가당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관내에 각각 24개 및 26개 배분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체계 미흡

해수부는 2020년도 사업지 선정평가부터 현장평가(배점 40점)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배점 15점)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으나 이마저도 **현지 시찰**의 **방법**으로 막연하게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 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지 선정 후 사업지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부족이나 지역협의체의 요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표 11]과 같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정된 300개 사업지**의 공모계획서상 **개별사업 3,059개 중 30.0%인 918개가 제외**(사업비 기준 19.43%)되었다.

[표 11] 공모계획 대비 기본계획 변경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연도	사업지	공모계획서		공모계획서 → 기본계획서					기본계획서	
				제외 사업			신규 사업			
		사업 수주)	사업비 (A)	사업 수	사업비 (B)	비율 [(B/A)*100)]	사업 수	사업비	사업 수	사업비
2019년도	70	680	755,326	239	197,940	26.2	239	141,340	703	704,430
2020년도	120	1,230	1,178,994	382	236,395	20.0	443	193,258	1,324	1,126,837
2021년도	60	589	513,991	148	64,566	12.6	183	70,046	634	538,285
2022년도	50	560	439,858	149	62,344	14.2	103	40,683	502	440,299
계	300	3,059	2,888,169	918	561,245	19.4	968	445,327	3,163	2,809,851

주: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의 합계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별표 1] "공모계획서의 개별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외된 사업비의 비율이 50% 이상인 사업지 현황"과 같이 **21개 사업지**는 당초 공모계획서에 포함된 개별사업이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 기준으로 50% 이상이 제외**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공모계획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공모계획서의 개별사업 중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외된 사업비의 비율이 50% 이상인 사례

- **[(강원) 고성군 문암1리항] 문암 탐험길 등** 10개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타당성 부족이나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문암 탐험길 등 7개 개별사업이 제외되어 전체 사업비(10,000백만 원)의 70.9%가 감소(7,092백만 원)한 대신 노후 어항시설 정비 등 15개 신규사업(7,112백만 원)이 추가
- **(통영시 달아항) 수변친수광장 등** 12개 개별사업이 포함된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지역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수변친수광장 등 10개 개별사업이 제외되어 전체 사업비(9,489백만 원)의 76.9%가 감소(7,301백만 원)한 대신 여객편의시설 조성 등 10개 신규사업(7,674백만 원)이 추가
- **(여수시 우학항) 비렁해안 자전거길 등** 11개 개별사업이 포함된 공모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나 수요예측 및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비렁해안 자전거길 조성 등 5개 개별사업이 제외되어 전체 사업비(7,555백만 원)의 62.7%가 감소(4,734백만 원)한 대신 어항시설 정비 등 5개 신규사업(4,247백만 원)이 추가

그 결과 많은 예산을 들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대상지 선정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가)” 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단기간 내에 다수의 공모 신청지를 평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 도모 등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사업지 선정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지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와 관련하여) 해수부는 향후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모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높은 사업지**가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미리 마련한 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② 앞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업지 선정계획을 미리 작성**하거나 **평가절차 종료 후에 평가점수를 수정**하여 **사업지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 사업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공모 사업지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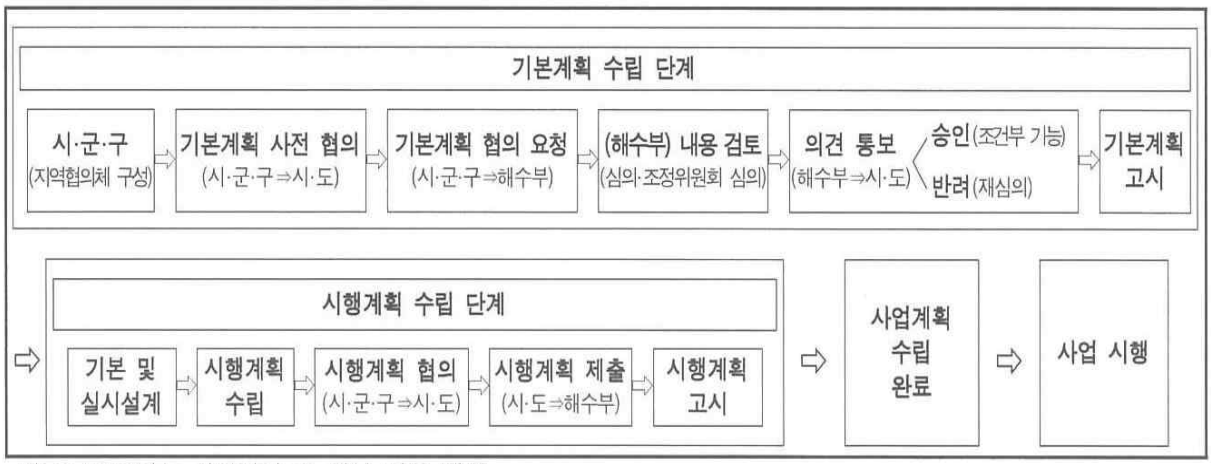
[실태]

가. 사업계획 수립·변경 절차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계획은 **사업지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되는데 **각 지자체**는 사업지 선정을 위해 제출한 공모계획서에 기초하여 지역협의체 및 해수부가 구성한 자문단과 협의·조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그림 5]와 같이 시·도와 사전 협의 후 **해수부**에 **제출**하면 해수부는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되고 **각 지자체**는 같은 법 제4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그림 5] 사업계획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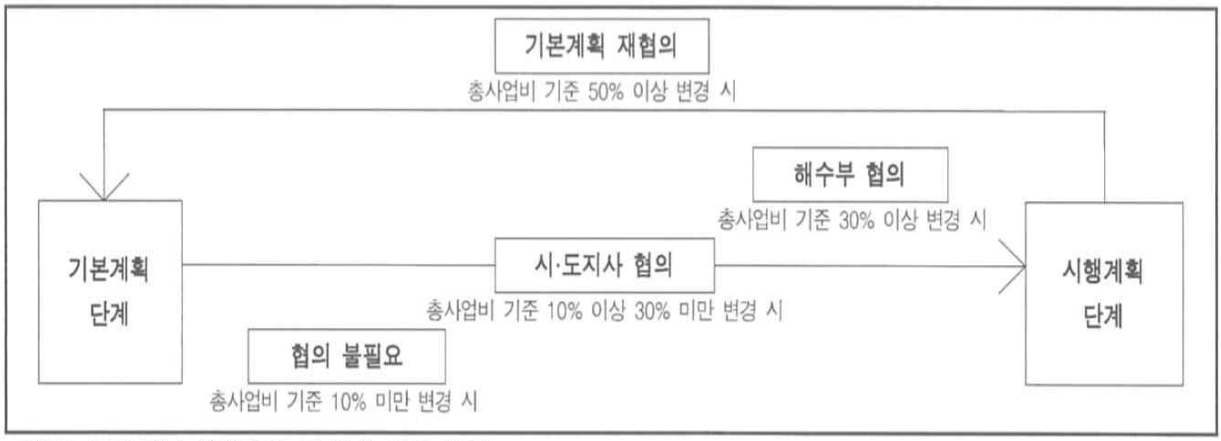


자료: 2021년도 시행지침 중 일부 내용 발췌

이후 **각 지자체**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 협의를 거쳐 **해수부**에 **제출**하면 되고 분야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일괄적**으로 **시행계획**을 **고시**한다.

한편 [그림 6]과 같이 기본계획상 세부 사업이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신규로 추가된 경우 총사업비 대비 전체 변경금액(절댓값의 합)의 비율에 따라 해수부 등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6] 기본계획 변경 절차



자료: 2021년도 시행지침 중 일부 내용 발췌

나. 사업계획 수립 현황

각 지자체가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300개 사업지**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표 12]와 같이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은 **3,163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2조 2,534억여 원**이고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조 8,098억여 원**이다.

[표 12] 기본계획상 사업계획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연도	계		공통사업		특화사업		소프트웨어사업 등
	사업 수[1]	사업비	사업 수	사업비	사업 수	사업비	사업비[2]
2019년도	703	704,430	320	340,056	383	251,702	112,672
2020년도	1,324	1,126,837	569	479,798	755	416,679	230,360
2021년도	634	538,285	296	233,661	338	188,353	116,271
2022년도	502	440,299	251	180,971	251	162,241	97,087
계	3,163	2,809,851	1,436	1,234,486	1,727	1,018,975	556,390

주: 1.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의 합계
2. 소프트웨어사업비 외에 사업지원비(위탁비, 설계비, 감리비)가 포함되었음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목적, 어항개발 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과의 정합성, 지역협의체 협의, 지역 역량강화 등 지원계획 등을 중점 고려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른 행정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업 시행 주체

각 지자체는 사업지별로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표 13]과 같이 직접 시행(47개 사업지)하거나 「어촌·어항법」 제47조의6에 따라 농어촌공사 또는 어촌어항공단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행(253개 사업지)하고 있다.

[표 13] 사업 시행 주체별 현황

(단위: 개소)

연도	사업지	사업 시행 주체				
		지자체	농어촌공사	어촌어항공단	지자체+농어촌공사	지자체+어촌어항공단
2019년도	70	19	7	30	10	4
2020년도	120	13	42	49	10	6
2021년도	60	6	20	25	9	-
2022년도	50	9	22	16	3	-
계	300	47	91	120	32	10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라. 사업비 집행 현황

[표 14]와 같이 2022년 말까지 300개 사업지의 총사업비 2조 8,964억 여 원 중 48.4%인 1조 4,017억여 원이 집행되었는데 **2023년 3월 말 현재 2019년도 38개** 및 **2020년도 1개 사업지**가 **준공**되었다.

[표 14]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

2019년도 70개 사업지			2020년도 120개 사업지			2021년도 60개 사업지			2022년도 50개 사업지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률주)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총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705,400	654,432	92.8	1,159,842	648,713	55.9	553,451	76,343	13.8	477,733	22,306	4.7

주: (집행액/총사업비)×100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문제점]

감사결과 요지

-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계획에 특화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
- 해수부는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개별사업의 명목만 유지한 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
- 해수부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지역특화상품 등 주요 지역역량강화사업 중 일부 사업의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신안군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중 94억여 원을 다른 용도(지방어항 건설사업)에 임의로 집행한 후 해수부에 보조금 사용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

가. 특화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기본계획 승인

1) 업무 개요

해수부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지가 선정된 **61개 지자체**로부터 **300개 사업지의 기본계획을 제출**받고서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7. 23.부터 2022. 11. 30.까지 **기본계획**을 **각각 승인**하였다.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사업지 선정을 위해 제출한 공모계획서에 기초하여 지역주민, 어촌뉴딜 관련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 및 **해수부**에서 **구성한 자문단**과 긴밀한 협의·조정 등을 거쳐 확정한 후 해수부의 **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인**되고 각 지자체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어촌뉴딜300사업의 기본계획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촌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2019년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각종 센터, 식당(카페 등 유사시설 포함) 등 시설물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기반사업 및 체험관광사업 등 **지역소득증대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계획에 반드시 **자부담**(해당 토지의 100%, 시설비의 20%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공공지원 종료 후에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어촌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특화시설의 경우 운영주체,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비용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시행지침에 따라 **주요 특화시설**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①수요분석에 따른 적정수요를 반영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지, ②운영관리계획(운영주체,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비용 확보방안)과 자부담계획(소득법인 구성 및 자부담 금액 등)은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수립한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에 수요분석에 따른 적정 수요가 반영되지 않거나 운영관리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202개 사업지**의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하동군 등 61개 지자체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선정된 202개 사업지에 조성을 완료하였거나 조성 중인 285개 주요 특화시설의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한 결과 [표 15]와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15]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의 내용 분석

(단위: 개)

연도	수요분석 반영 여부			운영관리계획 마련 여부			자부담계획 마련 여부		
	소계	반영	미반영	소계	마련	미마련	소계	마련	미마련
2019년도	52	1	51	52	-	52	52	14	38
2020년도	119	25	94	119	30	89	119	89	30
2021년도	59	10	49	59	19	40	59	50	9
2022년도	55	16	39	55	22	33	55	49	6
계	285	52	233	285	71	214	285	202	83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가) 수요분석에 따른 적정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시설계획 수립

강원도 고성군 **반암항**의 경우 시행지침에 따라 관광객 이용수요를 토대로 시설 규모를 산정하여 **복합낚시공원**(사업비 2,026백만 원)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암항 바다낚시공원 조성 시설계획

- (개요) 방파제나 호안을 찾는 바다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여 안전성 및 쾌적성을 갖춘 바다낚시 시설계획 및 축조 필요
- (조성계획) 관광객 이용수요를 토대로 시설 규모 산정
- (규모 산정)

최대 이용객 수	1인당 이용길이	소요길이	시설계획	비고
83.4명	2m	167m	197m	18% 여유

- (운영주체 및 방식) 반암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시설 운영 및 고성군 총괄
- (유지관리비용 확보방안) 고성군 지방비와 일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유지관리

반면, **하동군 술상항**의 경우 이용수요에 대한 분석 없이 기존 술상마을회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

술상마을 나눔센터 내 **귀어생활관**(숙박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58개 지자체**가 **수요분석 없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169개 사업지**에 **233개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요분석 없이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한 유사 사례

- **(하동군 중평항 중평어촌문화복합센터 내 숙박시설)** 구체적인 수요분석 없이 신성장사업의 도입으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변관광지 이용객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수립
- **(포항시 신창2리항 해양생태놀이터)** 구체적인 수요분석 없이 천혜 절경을 간직한 우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 체험연계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수립
- **(옹진군 대이작항 어류생태체험장)** 구체적인 수요분석 없이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겨울철 관광객 감소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성으로 해양자원 기반 관광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 수립

나) 운영관리계획도 없이 시설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전항의 경우 어촌도심어울림센터(사업비 3,100백만 원)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시행지침에 따라 **별도의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카페, 수산물 직판장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하는 내용의 운영관리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여수시 안도항**의 경우 구체적인 **운영주체나 운영방식**(직접 운영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도 **정하지 않은 채**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어촌탐구생활센터**(사업비 1,297백만 원)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56개 지자체**가 운영주체, 운영방식 및 유지관리비용 확보방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련하지 않은 채 **163개 사업지**에 **214개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영관리계획 없이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한 유사 사례

- **(남해군 설리항 해양레포츠 계류시설)** 체험시설 운영주체를 어촌계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운영관리 비용 확보방안은 미마련
- **(고흥군 선정항 갯벌체험시설)** 체험시설 운영주체를 운영위원회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미마련
- **(함평군 함평항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숙박시설 등)** 숙박시설 등 다수 수익시설의 운영주체를 어촌계 운영위원회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미마련

다) 지역소득증대시설에 대한 자부담계획 미수립

화성시 백미항의 경우 시행지침에 따라 **운영주체**에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B&B하우스 리모델링**(숙박시설, 사업비 998백만 원)과 **슬로푸드**(Slow Food) **체험장**(음식점, 사업비 200백만 원)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포항시 신창2리항**의 경우 운영주체의 **자부담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창바우 생활문화관(사업비 1,618백만 원) 내 **귀어생활관**(숙박시설)과 **해안풍경길**(캠핑장, 사업비 1,864백만 원)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37개 지자체**가 **73개 사업지**에 소득법인 구성 및 **자부담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83개 특화시설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가)" 내지 "다)"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 중 2019년도 37개 사업지에 조성된 **52개 특화시설**을 대상으로 **그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옹진군 대이작항**에 조성한 **어류생태체험장**(사업비 998백만 원)의 경우 2021. 12. 26. 준공 후 소득법인 구성이나 운영관리계획도 없어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등 [별표 2] "주요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 내용 분석 및 운영 현황(2023년 2월 말 기준)" 및 [표 16]과 같이 24개 특화시설이 **준공 후 길게는 2년 11개월** (여수시 죽포항 갯벌생태체험장), **짧게는 6개월**(옹진군 야달항 갯벌생태체험시설)이

지난 **2023년 2월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많은 예산을 들여 주요 특화시설을 조성하고도 장기간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는바**,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조성 중인 나머지 특화시설도 앞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

[표 16] 특화시설 준공 후 운영 현황(2023년 2월 기준)

(단위: 개)

구분	사유	다목적센터 내 소득시설	체험시설	캠핑장	계[주]
미운영	운영주체 미선정	-	2	-	2
	운영방식 미마련	1	1	-	2
	운영주체 미선정 및 운영방식 미마련	9	11	-	20
	소 계	10	14	-	24
운영	-	8	10	3	21
계	-	18	24	3	45

주: 2019년도 37개 사업지에 조성된 52개 특화시설 중 미준공 7개 시설 제외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특화시설 조성 후 미운영 사유

- **(고흥군 선정항 갯벌체험시설 외 1개 시설)** 관광객 등의 **수요가 많지 않아** 소득확보 우려로 운영주체 선정에 애로
- **(기장군 동암항 씨푸드존)** 어촌계원 중 35명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조합원 간의 운영경비 부담, 수익금 배분 등의 문제로 **운영방식 미결정**
- **(제주시 비양도항 및 함덕항 레저선박 계류시설)** 특혜소지로 **위탁 운영주체나 운영방식 결정에 애로**
- **(여수시 안도항 해양레저안전시설)** 해양레저안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안전요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 확보에 애로**

관계기관 의견

해수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기본계획 심의 시 주요 특화시설 조성에 대한 수요분석, 운영관리계획 및 자부담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준공 후 시설이 유휴화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검토·승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앞으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수요분석에 따른 적정수요가 반영되지 않거나 운영관리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특화시설 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계획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별표 2]에 기재된 준공 후 운영되지 않고 있는 특화시설 24개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특화시설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적인 운영관리계획 등을 마련하게 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나.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의 사업계획 임의 변경에 대한 통제방안 미비

1) 업무 개요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한 후 각 지자체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면서 시행지침에 총사업비 대비 변경금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협의주체 및 재이행 절차를 정하는 등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각 지자체가 지역협의체의 요구사항 변경 등을 사유로 해수부로부터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개별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조정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조정 절차**를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한편 **유사 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르면 총사업비 대비 세부사업별 **사업비 변경금액**(제외되거나 신규로 추가된 사업비 외에도 유지된 사업의 사업비 변경금액까지 포함)의 **절댓값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면 시·도 승인**, **20% 이상 30% 미만**이면 **해수부의 승인**을 받게 하고 **30% 이상**이면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재이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부는 유사사업에 정해진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 재량범위를 참고하여 각 지자체가 해수부 등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시행지침에 효율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수부**는 2019년 3월 시행지침을 마련하면서 기본계획상의 사업내용 **변경금액**[내역사업 간(공종 등) 변경 포함]이 **총사업비의 20% 이상**일 경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유사하게 **해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가 짧은 사업기간(당초 2년, 변경 3년) 내에 각 지자체가 사업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2020년 5월 시행지침**을 **변경**하면서는 [표 17]과 같이 전체 변경금액(각 사업당 변경금액의 절댓값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상 50% 미만**이면 **해수부와 협의**하고 **50% 이상이면 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재이행**하도록 하되 **이마저도** 기본계획상 **세부 사업**이 **제외**되거나 **신규 추가**된 **사업**만을 사업내용 변경으로 한정하는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비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재량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표 17] 기본계획 승인 후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 절차

총사업비 대비 전체 변경금액의 비율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기본계획 변경 절차	시·도승인	해수부 협의	기본계획 수립절차 재이행

자료: 2021년도 시행지침 중 일부 내용 재구성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 기간 중 해수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변경 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진시 왜목항**(2020년도 사업, 기본계획서상 총사업비 7,978백만 원)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서상 2개 사업**(요트무어링, 관광편의증대)이 **제외**되고 **6개 사업**(선착장 증고 보수, 부잔교설치, 마을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유지**되었으나 개별사업별로 **사업비가 적게는 200백만 원, 많게는 2,209백만 원이 증감**되는 등 **증감 금액이 계 7,541백만 원(총사업비의 94.5%)**인데도 **전체 변경금액**이 **8.5%로 간주**되어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별표 3] "기본계획 승인 후 통제 없이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변경된 사업지 현황" 과 같이 실질적으로 해수부가 승인한 기본계획상의 **개별사업 규모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개별사업의 명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각 지자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기본계획 승인 후 통제 없이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변경된 유사 사례

- **(보령시 고대도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7개 개별사업 중 여객선 선착장 연장 사업비를 3,314백만 원에서 153백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선착장 연장구간을 당초 35m에서 5m로 축소) 어민보행편의시설 사업비를 당초 200백만 원에서 1,954백만 원으로 늘리는 등 증감금액(계 7,592백만 원)이 총사업비(8,213백만 원)의 92.4%를 차지
- **(장흥군 노력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7개 개별사업 중 여객선 접안시설 연장 사업비를 4,100백만 원에서 1,098백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접안시설 연장구간을 당초 50m에서 7m로 축소) 어선피항시설 연장 사업비를 당초 2,000백만 원에서 4,622백만 원으로 늘리는 등 증감금액(계 6,451백만 원)이 총사업비(8,800백만 원)의 73.3%를 차지
- **(속초시 장사항)** 기본계획에 포함된 14개 개별사업 중 어항시설정비(TTP 보강) 사업비를 1,289백만 원에서 230백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TTP 수를 당초 432개에서 134개로 축소) 소공원조성 사업비를 당초 117백만 원에서 653백만 원으로 늘리는 등 증감금액(계 5,044백만 원)이 총사업비(14,534백만 원)의 34.7%를 차지

그 결과 해수부의 기본계획 심의·조정 절차가 형해화되고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해수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과다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수부가 승인한 기본계획이 형해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재량범위를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기본계획과 다르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임의로 과다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변경 재량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다. 어촌뉴딜300사업으로 구축한 체험프로그램 등 성과물 미활용

1) 업무 개요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일환**으로 각 사업지에서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교육**(워크숍 등), **홍보**(홈페이지 구축 등), **컨설팅**(지역활성화 컨설팅 등) 및 **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등으로 구성되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2019년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어촌·어항재생사업 역량강화 가이드라인」(2022년 2월, 해수부)에 따르면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대규모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며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조금법 제2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해수부는 각 사업지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완료된 후 지역주민 등이 그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해수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정산 보고서**와 **실적보고서만 제출**받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사업목적**에 맞게 그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2023년 1월 현재까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완료된 화성시 백미항 등 **2019년도 27개 사업지**(20개 지자체, 해당 사업비 계 7,377백만 원)를 대상으로 공통·특화사업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한 ①체험프로그램 개발, ②지역특화상품(먹거리) 개발, ③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47개** 주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의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체험프로그램 미활용

화성시 백미항의 경우 2021년 2월 어촌체험프로그램 고도화 컨설팅을 통해 기존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바지락·낙지 키핑 서비스, 해물 손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2023년 1월 현재 **마을주민들이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순천시 화포항**의 경우 2021년 12월 어촌계 소득 증진 등을 위해 갯벌 걷기 체험프로그램인 ‘갯벌에서 노르딕 워킹’ 등(사업비 16,079천 원)을

개발하였으나 기존 뻘배체험장과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23년 1월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등** [표 18]과 같이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 화성시 백미항 등 **14개 사업지 중** 순천시 화포항 등 **8개 사업지**에서 길게는 1년 1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현재까지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 18] 체험프로그램 미활용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지자체	사업지	개발완료일	개발사업비	체험프로그램명	비고
1	순천시	화포항	'21. 12.	16,079	갯벌에서 노르딕 워킹, 천마 치유길 걷기 등	기존 거차 뻘배체험장과의 연계 방안 협의 중
2	부안군	대리항	'22. 8.	18,700	체험관광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법인 구성 논의 중
3	보령시	효자도항	'22. 6.	41,050	어장체험	체험기반 조성 후 활용 예정
4	서산시	중왕항	'22. 10.	118,780	1박2일 귀어귀촌 프로그램	개㈜협동조합과 협약 체결 후 운영 예정
5	서천군	송석항	'22. 3.	18,346	김 가공 체험프로그램 등	해의커뮤니티센터 운영 연기로 미운영
6	남해군	동갈화항	'21. 12.	7,593	새우양식과정 견학, 새우잡이체험 등	갈화낚시공원 준공 후 연계사업으로 추진 예정
7	경주시	수렴항	'22. 6.	10,100	패각류 공예 체험, 보트체험	어촌계에서 운영 여부 논의 중
8	울진군	석호항	'22. 8.	8,997	전통어업 방식인 갓후리 체험 등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따라 논의 예정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지역특화상품(먹거리) 미활용

목포시 달리도항의 경우 2022년 10월 특화메뉴 개발 컨설팅을 통해 간재미, 웅어 등을 활용한 레시피를 개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전수한 결과 2023년 1월 현재 지역주민이 '식당'을 개업하여 **해당 레시피**를 **활용**하고 있었다.

반면 **부안군 대리항**의 경우 2022년 8월 마을소득증대 등을 위해 **꽃게장 등 3종**의 **지역특화상품 먹거리**(사업비 45,700천 원)을 **개발**하였으나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23년 1월 **현재까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등 [표 19]와 같이 지역특화상품 먹거리를 개발한 **옹진군 야달항 등 19개 사업지** 중 **강화군 후포항 등 10개 사업지**에서 **길게는 1년 3개월**이 지난 2023년 1월 현재까지 지역특화상품 먹거리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표 19] 지역특화상품(먹거리) 미활용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지자체	사업지	개발완료일	개발사업비	상품명	비고
1	강화군	후포항	'21. 10.	84,800	밴댕이튀김, 후포새우김밥 등	복잡한 조리과정과 단가 문제 등으로 미활용
2	여수시	죽포항	'22. 6.	16,729	갓도그	운영 인력 부재로 미활용
3	순천시	화포항	'21. 12.	53,830	칠게소시지, 칠게바비큐 등	시범운영 준비 중
4	보성군	동율항	'22. 6.	22,800	감자 모닝빵 브런치, 동파육 등	소득법인 설립 후 활용 예정
5	영광군	송이도항	'21. 12.	21,430	보리동죽, 꽃게된장수제비	음식 조리 기술을 이전한 식당 미운영
6	완도군	솔지항	'22. 10.	15,828	건강밥상	판매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미운영
7	부안군	대리항	'22. 8.	45,700	돌미역, 꽃게장, 바지락	어촌계 협동조합 구성 후 활용 예정
8	보령시	효자도항	'22. 6.	41,490	간재미회무침, 붕장어튀김 등	현재 판매계획이 없음
9	서천군	송석항	'22. 3.	20,443	멸치 김 강정, 새우 김 강정 등	해의커뮤니티센터 운영 연기로 미활용
10	제주시	비양도항	'22. 3.	24,500	꽃멸치 젓갈, 경단	현재 판매 및 활용 계획이 없음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인터넷 홈페이지 미활용

태안군 가경주항의 경우 **2021년 12월 홈페이지를 구축**한 이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내, 특산물 판매 정보 등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었다.

반면 **보성군 동율항**의 경우 2021년 9월 지역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yull.co.kr, 사업비 45,562천 원)를 **구축**하였으나 2023년 1월 현재까지 **1년 이상 게시글이 업로드되지 않아**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주요 포털 사이트(네이버 등)에서 '동율항', '동율마을' 등 연관된 검색어를 검색하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등 [표 20]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군산시 명도항 등** 14개 사업지 중 보성군 동율항 등 10개 사업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길게는 **1년 4개월 동안 게시글이 업로드되지 않거나 도메인 사용 기한이 경과**되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등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표 20] 인터넷 홈페이지 미활용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지자체	사업지	구축완료일	구축사업비	포털사이트 검색 가능 여부	최근 게시글 업로드 시기	비고
1	옹진군	야달항	'21. 12.	56,300	O	'21. 12.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2	옹진군	답동항	'21. 12.	25,097	X	'21. 12.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3	여수시	죽포항	'21. 12.	16,523	O	'21. 8.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4	순천시	화포항	'21. 12.	37,538	X	'21. 12.	어부장터 활성화 이후 연계 운영 예정
5	보성군	동율항	'21. 9.	45,562	X	'21. 9.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6	완도군	가학항	'22. 10.	17,642	O	'22. 10.	특산품 판매 여건이 어려워 홈페이지 미활용
7	부안군	대리항	'22. 8.	22,200	X	'22. 7.	어촌계에서 특산품 판매 정보 등 미게시
8	부안군	식도항	'22. 8.	37,600	X	'22. 8.	주민 자체 운영 곤란으로 미활용
9	서천군	송석항	'22. 3.	36,350	O	'22. 3.	해의커뮤니티센터 운영 연기로 미활용
10	남해군	동갈화항	'21. 12.	9,546	-	-	도메인 사용기한 경과로 접속 불가능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주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하고도 [표 21]과 같이 47개 주요 지역 역량강화사업 중 28개 사업의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지역수익창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표 21] 주요 지역역량강화사업 완료 후 성과물 활용 현황

(단위: 개)

구분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특화상품(먹거리) 개발	홈페이지 구축	계
활용 성과물	6	9	4	19
미활용 성과물	8	10	10	28
계	14	19	14	47

자료: 해수부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해수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성과물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물이 미활용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원인과 애로

사항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앞으로 각 사업지에서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완료한 후 그 성과물을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라 그 활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주의)

② [표 18], [표 19], [표 20]에 기재된 지역역량강화사업 완료 후 미활용 중인 28개 성과물에 대하여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안에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라. 어촌뉴딜300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집행

1) 업무 개요

해수부는 2018. 12. 17. 2019년도 사업지 중 신안군 관내 만재항 등 4개 어항(총사업비 44,828백만 원)을 선정한 후 2019. 1. 29.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3차례에 걸쳐 **신안군**에 **국고보조금 10,982백만 원**을 **교부**하였고, **전라남도**는 같은 해 2. 7.부터 10. 21.까지 3차례에 걸쳐 **신안군에 도비 1,412백만 원을 교부**하는 등 **해수부와 전라남도는 신안군에 계 12,394백만 원**의 **국·도비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해수부와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2019년도 어촌뉴딜 300사업의 보조금과 신안군의 자체 재원으로 예산(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법 제2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어촌뉴딜300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인 **어촌뉴딜300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법 제27조 및 제2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3개월 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의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해수부에 **보조금의 실제 사용 실적**에 맞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했다.

그리고 **해수부**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신안군 ㉮과 ㉯팀 A와 팀장 B는 2019. 5. 13. “2019년도 어촌

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계약금액 2,087백만여 원)을 체결한 후인 같은 해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정확한 날짜 모름) **어촌뉴딜300사업**은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 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반면** 예산 배정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어항건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15,689백만 원 중 10,571백만여 원**을 **당시 별도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지방어항건설사업**의 **공사비 용도로 먼저 집행**하고 2020년 **지방어항 건설사업비**가 **교부**되면 **어촌뉴딜300사업비로 계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과장 C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군수의 방침 결정을 받았다.

이후 A는 2019. 6. 12.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을 각각 화도항과 수대항 지방어항건설사업의 2차분 공사비로 집행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팀장 B와 과장 C 등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6. 23. “지방어항건설사업(화도항) 2차분 공사계약”(계약금액 3,012백만여 원)23)과 “지방어항건설사업(수대항) 2차분 공사계약”(계약금액 5,171백만여 원)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D는 2020. 1. 16. 지방어항건설사업의 **공사비 용도**로 **먼저 집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10,571백만여 원 가운데 미집행 잔여분 중 1,297백만여 원**을 **하태항 지방어항건설사업의 2차분 공사비**에 **포함**하여 **집행**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팀장 B와 과장 C 등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1. 17. “지방어항건설사업(하태항) **2차분 공사계약**”(계약금액 6,396백만여원)을 **체결**하였다.

또한 **E는** 2020. 2. 25. 팀장 B와 과장 C의 결재를 받아 전라남도에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보조금 사용 실적을 보고하면서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5,671백만여 원을 **지방어항건설사업의 공사비로 집행**하고도 이를 **전부 어촌뉴딜300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면서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9,417백만여 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도 어촌뉴딜300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수부**는 전라남도를 통해 매년 신안군의 전년도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검토 없이 공람·완결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5. 12. 및 2021. 3. 18. 2차례에 걸쳐 생낌항 등 **신안군 관내 2019년도 사업지 3개소를 현장 점검**하면서 신안군이 제출한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항목을 적정**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안군**은 [별표 4]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 예산(보조금 포함)의 용도 외 사용 현황” 과 같이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시설비 예산 9,417백만여 원(국비 보조금 기준 6,592백만여 원)을 다른 사업의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해수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보조금이 관계법령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심사와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신안군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안군은 자연재난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2019년에 보조금 예산의 35%가 교부되었으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필요한 상황이었고 지방어항건설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조기 완료함으로써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공익적 차원에서 어촌뉴딜300사업 예산의 일시적인 용도 외 사용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① 앞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B, C, E)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해양수산부장관은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신안군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 종합 결론

이번 감사는 해수부가 2018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지 선정평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재검토를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해수부가 **대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지 선정 평가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지별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적정 수요와 운영관리계획 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시설계획**과 지자체의 **사업계획 임의 변경**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사업 시행 외에 **사업 성과물**의 **사후활용방안**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계기가 되어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촌뉴딜300사업을 총괄하는 해수부가 다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관리하는데 일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지별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사실상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지역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다수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수부는 앞으로 유사사업의 추진체계를 사전에 내실 있게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해수부가 2023년부터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으로 3조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의 추진성과를 심층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도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